

전주지방법원 2024. 11. 6 선고 2024가단15904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1. C

2. D

변 론 종 결 2024. 10. 23.

판 결 선 고 2024. 11. 6.

주 문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24. 2. 27.부터, 피고 D은 2024. 2.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아래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는 주류 및 발효식품의 양조, 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유한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주류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전무이사, 피고 D은 부사장이다.

2) 원고는 2021. 3. 1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주류 등 제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은 원고가 지정한 결제일에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물품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같은 날 원고와 피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액을 각 50,0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류공급대금의 지급을 수시로 지체하였고, 2024. 1. 16. 현재 지급이 지체된 주류대금이 638,173,174원에 이르렀으며, 같은 날 소외 회사에게 위 주류대금을 2024. 1. 18.까지 지급해 달라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23. 12. 28. 전주지방법원 2023회합1033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24. 6. 24.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주류 미수대금 채무 638,173,174원 중 각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한도액인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지급을 청구한 이 사건 지급명령正本 송달일의 다음날인 피고 C은 2024. 2. 27.부터, 피고 D은 2024. 2.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와 다른 연대보증인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담보 등이 존재함에도 피고들에게 먼저 연대보증채무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C이 연대보증인인 이상, 위 피고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희